

행 정 명 령(EXECUTIVE ORDER)

**ALLEGANY, CATTARAUGUS, CHAUTAUQUA, ERIE, GENESEE, JEFFERSON, LEWIS,
LIVINGSTON, MONROE, NIAGARA, ONEIDA, ORLEANS, OSWEGO, WAYNE, WYOMING
카운티 및 인접 지역의 재난 선포**

2014년 1월 6일부터 계속 심한 겨울 폭풍이 뉴욕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Allegany, Cattaraugus, Chautauqua, Erie, Genesee, Jefferson, Lewis, Livingston, Monroe, Niagara, Oneida, Orleans, Oswego, Wayne, Wyoming 카운티 및 인접 지역 내 중요한 대중교통, 유틸리티 서비스, 공중보건, 공공 안전 시스템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

이번 겨울 폭풍은 눈보라와 같은 기상 상황, 약 2피트 높이의 적설량, 시속 45마일을 넘는 강풍, 위험할 정도로 낮은 체감지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상황은 대규모 정전과 도로 폐쇄, 주택, 아파트, 상가, 공공 재산 및 민간 자산의 파손을 야기하고, 공중 보건과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;

그러므로 본인 ANDREW M. CUOMO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으로, 이 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사태가 임박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. 그러므로, 뉴욕주의 헌법 및 행정법 제 2-B조 제 28항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2014년 1월 6일부로 Allegany, Cattaraugus, Chautauqua, Erie, Genesee, Jefferson, Lewis, Livingston, Monroe, Niagara, Oneida, Orleans, Oswego, Wayne, Wyoming 카운티와 인근 지역에 주 재해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; 그리고

나아가 행정법 제2-B조 제29항에 따라 주의 종합 비상 사태 관리 계획을 이행을 지시하며, 2014년 1월 6일을 기하여 주 비상 사태 관리실(the 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), 보건부(the Department of Health), 교통부(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), 주 경찰국(the State Police), 육해군부(the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), 환경보존부(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), 주 교정 서비스부(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), 공공 서비스 위원회(Public Service Commission), 화재 예방 및 진압실(Office of Fire Prevention and Control), 노동부(Department of Labor), 공원, 휴양지 및 역사 유물 보존실(Office of Parks,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), 일반 서비스실(Office of General Services), 뉴욕주립대(State University of New York), Thruway 당국(Thruway Authority) 및 기타 필요한 주 정부기관들과 미국 적십자사(American Red Cross)에 이 재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작업을 통해 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지역의 지방정부 및 주민들을 돕고, 공중 보건 및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다른 도움을 제공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.

이 선포는 연방 자동차 안전 규정(FMCSR)의 Part 390 - 399의 구호 활동을 규정하는 49 C.F.R. §390.23(a)(1)(A)의 요건을 만족합니다. 제설 관계자들이 중요한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공공 전력 복구반이 뉴욕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FMCSR의 구조 활동이 필요합니다.

또한 본인은 Jerome M. Hauer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 장관을 이 사건의 뉴욕주 협조 담당자로 임명했습니다.

이천 십사년 일월 육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

권한 및 주 인사의 권한에 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